

현 장 실 습 협 약 서

_____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수성대학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의 “을”소속 학생들(이하 “실습생”이라 한다)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,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,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현장실습의 시간 및 장소)

- ① 현장실습은 실습학기제(정규학기중 또는 계절학기중)로 운영되고 1일 8시간/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, “갑”과 “실습생”의 협의에 의해 상호 조정할 수 있다. 단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실습 장소는 “갑”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, 실습생의 보건·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한다.

제2조 (“갑”의 현장실습 운영)

- ① “갑”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현장실습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.
- ② “갑”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③ “갑”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.

제3조 (“을”의 현장실습 운영)

- ① “을”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전공, 모집인원, 실습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,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을”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“갑”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.

제4조 (협약의 효력 및 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단, “갑” 또는 “을”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5월 14일

“갑”	
기관명 :	
주소 :	
사업자등록번호 :	
대표자 :	Ⓜ

“을”	
기관명 :	수 성 대 학 교
주소 :	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
고유번호 :	5 0 2 - 8 2 - 0 3 9 4 5
대표자 :	김 선 순 Ⓜ

※ ‘갑’(기업 기관)의 직인란에는 반드시 직인 또는 법인도장을 사용하여야 함(사인, 개인도장 금지).

현 장 실 습 협 약 서

_____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수성대학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의 “을”소속 학생들(이하 “실습생”이라 한다)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,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,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현장실습의 시간 및 장소)

- ① 현장실습은 실습학기제(정규학기중 또는 계절학기중)로 운영되고 1일 8시간/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, “갑”과 “실습생”의 협의에 의해 상호 조정할 수 있다. 단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실습 장소는 “갑”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, 실습생의 보건·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한다.

제2조 (“갑”의 현장실습 운영)

- ① “갑”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현장실습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.
- ② “갑”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③ “갑”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.

제3조 (“을”의 현장실습 운영)

- ① “을”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전공, 모집인원, 실습기간 등의 신청서를 접수,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을”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“갑”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.

제4조 (협약의 효력 및 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단, “갑” 또는 “을”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5월 14일

“갑”	
기관명 :	
주소 :	
사업자등록번호 :	
대표자 :	Ⓜ

“을”	
기관명 :	수 성 대 학 교
주소 :	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
고유번호 :	5 0 2 - 8 2 - 0 3 9 4 5
대표자 :	김 선 순 Ⓜ

※ ‘갑’(기업 기관)의 직인란에는 반드시 직인 또는 법인도장을 사용하여야 함(사인, 개인도장 금지).